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수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의 지정,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254 호. 2021. 6. 15. 공포, 2021. 12. 16. 시행)됨에 따라 카드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 카드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 기준 마련(안 제21조제6항 및 제7항)

-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 카드납부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, 업무수행능력,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함
-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의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이견 없음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법 제23조제9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
2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(이하 “신용카드등”이라 한다)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, 업무수행능력,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

⑦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부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대부료등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1조(대부료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법 제23조제9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(이하 “신용카드등”이라 한다)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, 업무수행능력,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⑦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부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대부료등 납부대행
<u><신 설></u>	

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국유림경영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098